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329
------	-----

2022.12.21.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2.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1. 제안이유

-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 하며,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함(안 제9조).
- 나. 공정무역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을 두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위원 구성을 모두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함(안 제10조제3항).
- 다.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0조제4항).
- 라.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 기능을 삭제함(안 제11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주체와 기능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 구성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됨.

#### 나.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과 현황

- 서울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심화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공정무역에 관한 국내외 저변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공정무역조례」” )를 제정함(2012.11.1.).

-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 ▶ 판로 마케팅, ▶ 교육 · 홍보 · 캠페인, ▶ 공정무역단체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정무역위원회는 ▶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 평가, ▶ 정책 자문 및 심의, ▶ 공정 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 ▶ 서울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재까지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함.

#### <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실적 >

연 도	개최실적			개최현황		개최 방식	안 건
	소 계	대 면	서 면	개최일	참석인원		
합 계	16회	9회	7회				
2013	1회	1회	-	2013.04.03.	6명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및 공동 위원장 선출</li> <li>◦ 2013년 공정무역 사업계획자문 및 심의</li> </ul>
2014	3회	1회	2회	2014.04.10.	4명	대면	◦ 2014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
				2014.07.23.	5명	서면	◦ 2014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변경안 자문 및 심의
				2014.08.26.	5명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공정무역 교육연구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선정 결과 심의</li> </ul>
2015	3회	2회	1회	2015.04.07.	7명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심의</li> <li>◦ 위원회 보고 및 임기연장</li> </ul>
				2015.8.18.~24.	7명	서면	◦ 2015년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공모사업 기관선정 결과 심의
				2015.12.30.	6명	대면	◦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기본계획 심의 확정
2016	3회	2회	1회	2016.04.15.	6명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기본계획 심의</li> <li>◦ 2016년 공정무역 캠페인 사업선정</li> <li>◦ 공정무역위원 위·해촉</li> </ul>
				2016.07.07.	6명	대면	◦ 2016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공모단체 최종심사

연도	개최실적			개최현황		개최방식	안건
	소계	대면	서면	개최일	참석인원		
				2016.07.22.	5명	서면	◦ 공정무역 지구마을 매장 운영방법 변경승인
2017	2회	2회	-	2017.03.09.	7명	대면	◦ 공정무역도시 기준(안) 설정 및 2017년 사업계획 심의 ◦ 공정무역위원 위촉 보고
				2017.04.05.	5명	대면	◦ 공정무역위원회 재구성 보고(10명 → 9명) ◦ 2017 지원사업 선정(단체 10개, 자치구 8개)
2019	1회	1회	-	2019.04.04.	7명	대면	◦ 공정무역위원회 민간위원 신규위촉 및 공동위원장 선출 ◦ 2019년 민간단체 및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안) 심의
2020	1회	-	1회	2020.4.10.	6명	서면	◦ 2020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
2021	1회	-	1회	2021.3.8.	6명	서면	◦ 2021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 ◦ 공정무역위원 위촉 보고(6명 임기연장)
2022	1회	-	1회	2022.4.5.	5명	서면	◦ 2022년 공정무역 사업계획 자문 및 심의

- 그러나 공정무역 분야의 전문가가 충분하지 않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의 소속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위원회 개최실적도 연간 1회 수준에 머물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 (1)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의 변경(안 제9조 및 안 제11조)

- 개정안은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정무역 위원회에 회부·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3항·제4항),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에서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의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p> <p>1.·2. (생략)</p> <p>3.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p> <p>4.·5. (생략)</p>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p> <p>④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 -----.</p> <p>1.·2.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p>4.·5. (현행과 같음)</p>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조례안의 의회제출,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결정, 보조사업 운영 평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 보조금 부정수급과 명단공표,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추가함.
  -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심의와 구(舊)「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2017.7.13.)함<sup>1)</sup>.

- 그러나 「공정무역조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까지 존치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정합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 위원회 비상설화 및 위원구성의 변경(안 제10조 및 안 제12조)

- 개정안은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제10조제1항 · 제4항),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인 서울시 공무원을 삭제하며(안 제10조제2항 · 제3항), 정기회와 임시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 ----- ----- <u>구성할 수 있다.</u></p> <p>② ----- <u>위원장 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 <u>호선한다.</u>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 <u>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u></p>

1) 舊 「지방재정법」(現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면서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비상설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

<p><u>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u>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⑤ (생 략)</u></p> <p>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li> <li>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li> <li>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li> </ol> <p>② ~ ④ (생 략)</p>	----- ----- ----- <u>위촉한다.</u> <p><u>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u>⑤ (현행과 같음)</u></p> <p>제12조(회의 등) &lt;삭제&gt;</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 당초 연간 3회 수준으로 운영되던 공정무역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심의 기능이 상실된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회 수준으로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심의·자문을 위한 서면회의만 개최됨.
- 또한,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을 통해 개최실적이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면서 공정무역위원회의 비상설화가 추진됨.
  -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상시적으로 위원이 구성되는 상설위원회와 달리 비상설위원회는 전문가 인력풀을 이용하여 필요시에만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함.
- 이와 함께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됨.

-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운영형태를 비상설화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공정무역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의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시의원까지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29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회

## **1. 수정이유**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면서 주민대표기관인 시의원의 시정참여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포함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구성한다.</u></p> <p>② 위원회는 <u>공동위원장 2명</u>을 포함하여 10명 <u>이내로</u> 구성하되, <u>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u>이 된다.</p> <p>③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u>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u>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 ----- ----- --- <u>구성할 수 있다.</u></p> <p>② ----- <u>위원장 1명</u>----- ----- <u>이내의 위원으로</u> <u>구성하되, 위원장은 -----</u> ----- <u>호선</u> <u>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u> <u>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u> <u>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u>공정무역 관련 단체</u> <u>및 -----</u> ----- ----- ----- <u>위촉한다.</u></p> <p>④ 위원회는 <u>비상설로 운영하</u> <u>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u> <u>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u>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한다.</u></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를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정무역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으로, “선출하는 1명이 된다”를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u>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u></p> <p>④ 시장은 제3항의 <u>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구성한다.</u></p> <p>② 위원회는 <u>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u></p> <p>③ 위원은 <u>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④ <u>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⑤ (생 략)</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p> <p>1. · 2. (생 략)</p> <p>3. <u>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u></p>	<p>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u></p> <p>④ ----- <u>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u></p> <p>제10조(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① ----- ----- ----- <u>구성할 수 있다.</u></p> <p>② ----- <u>위원장 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 ----- ----- 위촉한다.</u></p> <p>④ <u>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의 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4. · 5. (생 략)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 ④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